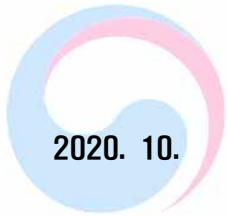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정(안)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활용과

1. 개정이유

효율적인 규정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분산되어 있는 국유특허 관련 고시(3개)를 통·폐합하여 일원화 하며 이와 더불어 국유특허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시, 대응하는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2. "발명기관"이란 직무발명을 한 발명자가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3. "특허등"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말한다.

제2장 공무원 직무발명의 무상실시요령

제3조(무상실시 대상 및 기간) ① 특허청장은 영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또한 국유특허권 등록 이후 3년 동안 미실시한 경우에는 미활용 국유특허권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영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③ 국유특허권의 무상실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제4조(무상실시신청) ① 이 고시에 따른 무상실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무상실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무상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유서

- 2 -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유특허권 사업화 추진일정
2. 사업화 자금 수요 예측 및 조달 계획
3.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사업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시설규모 포함)

④ 실시하려는 국유특허권의 공동권리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제1항의 무상실시 신청서 제출 시 공동권리자의 통상실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자 수의 제한)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을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실시자 수를 제한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2. 신청순서

제6조(무상실시의 제한) ① 국유특허권이 제3조제2항에 의한 최초의 무상실시 기간 종료 후 해당 국유특허권에 대한 실시계약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약이 연장된 국유특허권은 이후 제3자와 실시계약을 맺을 경우엔 유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제7조(중소기업우대) 중소기업에서 제3조제2항에 의한 무상실시 기간 종료 후 해당 국유특허권에 대해 재실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실시료 산정시 기본율을 2%로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등의 지급기준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기준) ① 특허청장은 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함에 있어 별표 1 '보상금등의 감액기준' 을 고려하여 보상금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에서 직접비용(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사용한 금액,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규정의 준용)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한다.

제4장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관리 업무의 위탁

제10조(수탁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아래 제1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 거래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계획, 업무수행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4. 신청기관의 조직·인력·시설·장비 등 현황
5. 그 밖에 수탁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수탁대상기관의 지정 및 위탁계약 체결 등) ① 특허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수탁기관과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 수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

제12조(지휘·감독 및 수탁기관의 의무) ① 특허청장은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이 행하는 행위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 업무에 관련된 지시·조치·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의 변경이나 조직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변경사항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및 영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 및 운영의 투명성, 특허권자 및 통상실시권자 등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그 소속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영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당한 실시료 이외의 금전이나 물품을 실시자 또는 실시와 관련된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

⑦ 수탁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의 활용 촉진을 위해 특허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업무 범위 등)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계약서에 기재된 발명기관의 국유특허권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업무
2. 국유특허권의 홍보 등 관리

제14조(처분절차 및 처분방법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제13조 본문에 따라 위탁된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영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처분절차 및 처분방법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서류와 계약서를 구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 5 -

받아야 하며,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체결 완료문서 등을 특허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계약기간 만료 후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에 송부하여 실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실시권자가 실시료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계약일 또는 특정 기일을 기준으로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납부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처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실적보고서 등 제출) 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실적보고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대장의 작성·비치) 수탁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이 요령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특허청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5장 공무원 직무발명의 심판·소송

제18조(심판 수행체계)

① 국가공무원이 개발 또는 창작하여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특허심판이 청구되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의 심판규정을 준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6 -

② 국가공무원이 개발 또는 창작하여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이 청구되어 심판청구서 부분이 특허청에 송달되면, 특허청장은 발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③ 통보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심판당사자를 지정하여 발명자 및 관계자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심판업무를 총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특허심판의 심결문이 특허청에 송달되면 특허청장은 즉시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패소하였을 경우엔 발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의2(심판 대리인의 선임)

① 심판당사자는 심판업무를 총괄 대응하며 청구된 심판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다.

② 심판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심판대리인을 선임한 후 즉시 특허심판원에 심판대리인 선임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하며, 심판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소송 수행체계)

① 국가공무원이 발명 또는 창작하여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대해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소가 발생하였을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소장 부분이 특허청에 접수되면 특허청장은 발명기관의 장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업무를 수행한다.

③ 발명기관의 장은 법원 출석, 변론, 검찰청 보고 등 소송의 진행과정을 특허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의2(소송 대리인의 선임)

① 발명기관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즉시 특허청장에게 통보한다.

② 발명기관의 장은 소송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

- 7 -

(범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제검토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제2020-30호, 2020. 11. 2.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 등 폐지) 이 고시의 시행으로 종전에 시행된 다음 각 호의 고시 등은 각각 폐지한다.

1. 국유특허권의 무상실시요령(특허청고시 제2018-18호)
2.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등의 지급기준(특허청고시 제2018-19호)
3.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운영요령(특허청고시 제2018-33호)

[별표 1]

보상금등의 감액기준

위반사항	위반주체	보상금 종류	관련법령	감액기준
영 제5조의 직무발명 신고는 하였으나 영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발명자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영 제16조 영 제17조	보상금 전액을 미지급
영 제5조 및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발명자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영 제16조 영 제17조	보상금 전액을 미지급하거나 50%를 감액하여 지급
영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발명자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영 제16조 영 제17조	보상금의 50%를 감액하여 지급
	발명기관	기관포상금	영 제18조 제1항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발명기관 소속의 자	기관포상금	영 제18조 제1항	

국유특허권 무상실시 신청서 (실시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④ 기 업 체 명		⑤사업자등록번호	
국유 특허권 표시	⑥ 권 리 의 표 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		
	⑦ 발명(고안)의 명칭			
실시권 범 위	⑨ 실 시 기 간	0000.00.00 ~ 0000.00.00 (0년간)		
	⑩ 실 시 지 역	대한민국 전역		
	⑪ 실 시 내 용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실시행위		
	⑫ 점 유 율 (%)			
	⑬ 예 상 판매단가 및 수량			
	⑭ 판매단가 및 점유율 산 정 근 거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 허 청 장 귀 하				
※ 첨부서류 1. 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무상실시 사유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기재요령 ○ 실시내용 :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실시행위 유형 중 기재 ○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국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 예상판매 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의 평균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홈페이지 /e-mail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 제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사 업 장							
업 종							
생산품목							
사업화 추진일정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위 기술분야의 사업경험 및 기술 축적도							

2. 국유특허 사업화 자금수요 예측 및 조달 계획

--	--

무상실시 사유서

(예시) 등록 완료 후 3년 동안 실시 사례가 없는 국유특허 기술로 무상 실시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주) 0 0 0 대표이사 (인)

- 12 -

[별지 제2호 서식]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 수탁기관 지정신청서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 수탁기관 지정신청서			
신청인	기관(법인)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기술거래기관 지정일)			
설립목적 및 주 사업내용			
<p>「발명진흥법」 제56조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를 위탁받기 위한 수탁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특허청장 귀하</p>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및 홍보 등 사업계획서		
	4. 신청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현황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제활용품)]

- 13 -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양쪽)

제1조	계약목적	'수탁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에 대하여 국유특허권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홍보 등의 관리를 수행한다.		
제2조	수탁기관	기관(법인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관리정보시스템	[] 사 용 * 사용시 시스템명 : _____ [] 미사용		
제3조	위탁업무	_____ 발명기관에서 승계된 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허락, 국유특허권 홍보 등 관리		
제4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5조	신의성실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청장'과 '수탁기관의 장'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된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특허청장'과 '수탁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위탁된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특허청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특허청
대표자 : _____ (서명 또는 날인)
수탁기관명 : _____
대표자 : _____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위탁기관 지정서 1부	수수료	없음
------	-------------	-----	----

210mm×297mm[보존용지(2중) 70g/m²]

국유특허권 처분·관리업무 수탁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


2. 기관명 :

3. 대표자 :

4. 주소 :

위 기관을 「발명진흥법」 제56조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에 의한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 . . .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국유특허권의 무상 통상실시권 실시 계약서

특허청장(갑)과 (을)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허락(이하 "실시"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실시권의 허락) 갑은 다음의 국유특허권의 실시를 을에게 허락한다.

특 허 번 호 : 특허 등록 제호
발명의 명칭 :

제2조(실시권의 범위) 이 계약에 있어서 실시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시기간 : 20 . . . ~ 20 . . . (년간)
2. 실시수량 :
3. 실시범위
 - 실시지역 : 대한민국 전역
 - 실시내용 :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실시행위

제3조(실시료) 실시료는 실시기간동안(년간) 무상으로 한다.

제4조(실시권의 등록) 을은 이 계약의 체결후 을의 비용으로 통상실시권의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특허권의 존속) 갑은 이 특허권을 유효하게 존속시키기 위하여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법적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특허권의 무효) 이 특허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실시권의 이전 등) ① 특허법 제102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권의 이전, 기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을 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없이 행할 수 없다.

1.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 16 -

2. 재실시권의 허락
3. 기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업주체의 변경

제8조(특허의 표시) ① 을은 이 특허권의 실시에 의한 제품에 당해 특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특허의 표시를 함에 있어 발명기관의 명칭을 병기할 수 없다. 다만, 발명기관의 별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실시상황조사) 갑은 필요한 경우 을로부터 실시상황 기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실시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권의 침해) ① 을은 이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갑은 전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위반한 경우
2. 이 특허권의 실시에 대하여 허위보고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3. 이 계약의 체결이 허위의 표시 또는 기타 사실과 다른 보고에 의하여 성립된 것을 갑이 인지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재실시) ① 을은 제2조의 무상실시기간 만료 후 재실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재실시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에게 재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③ 재실시는 유상으로 하며, 재실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실시료는 다음 방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 실시료 = 단위제품의 가격×허락수량×점유율×기본율

1. 단위제품의 가격 : 추후 결정
2. 허 락 수 량 : 추후 결정
3. 점 유 율 : 추후 결정
4. 기 본 율 : 3%
5. 실 시 료 : 추후 결정

제13조(계약기간 만료후 실시) ① 을은 제12조에 의한 제실시계약의 체결없이 제2조 제1호의 무상 실시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특허권의 실시(특허 제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 등)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기간 중에 이미 생산된 물건에 대하여는 갑의 허락을 얻은 후 판매·처분할 수 있다.

② 을이 전항 단서규정에 의한 갑의 허락을 받으려면 잔여물건의 품명, 수량, 보관장소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실시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에 의한 을의 허락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허락여부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3항의 허락을 함에 있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관련법령의 적용 등)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허법,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관례 및 사회 통념에 따른다.

② 이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른다.

갑과 을은 상기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갑이 발명기관에 해당계약서를 공문으로 송부한다.

20 년 월 일

갑 : 특 허 청 장 (인)

을 : 회사주소
 업체명 대표이사 대표자성명 (인)